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323,290,000 | 39,698,700 |
| 일반회계 | 1,101,400,000 | 33,042,000 |
| 특별회계 | 221,890,000 | 6,656,7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51,350,000 | 4,540,500 |
|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94,790,000 | 2,843,700 |
|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56,560,000 | 1,696,800 |
| 기타특별회계 | 70,540,000 | 2,116,20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721,000 | 21,630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11,030,000 | 330,900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1,678,000 | 50,34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,840,000 | 205,20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,330,000 | 39,900 |
|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1,700,000 | 51,000 |
| 청소사업특별회계 | 43,550,000 | 1,306,50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,220,000 | 36,6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312,000 | 9,36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| 2,159,000 | 64,77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25,96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,00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보수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직무수행경비
3. 배상금, 국선번호료, 법정보상금
4.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5.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
6. 반환금
7. 선거관련경비